

① 개정 개요

※ 국세 동반개정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· <u>가산금</u>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<u>그 신탁재산으로써</u>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 발생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 명확화 ① 신탁재산의 범위를 그 신탁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및 재산으로 확대 ② 가산금을 '납부지연가산세'로 용어정비

□ 개정 내용

-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재산의 관리,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

신탁법 §27【신탁재산의 범위】

신탁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멸실, 훼손,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.

- '가산금'을 '납부지연가산세'로 용어 변경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3조(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